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를 위한 대책은..

1. 머리말

지난해는 돼지콜레라 근절의 마지막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던 중 3월 25일 뜻하지 않는 구제역 발생이란 불상사를 당하게 되어,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은 잠시 주춤하였고 구제역 불끄기에 여념이 없었던 한해였다.

검역원에서는 밤낮 구별 없이 정밀검사와 예방약 접종 및 역학조사를 위해 쉴 사이 없이 움직였고, 양축농장 현장에서는 차단방역, 소독, 가축의 이동제한 등 전국민이 구제역 조기근절을 위해 전력 투구했었다.

그 결과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발생보고가 없이 한 해를 넘기고 이제 청정화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동안 소홀해진 돼지콜레라 근절 사업의 박차를 위한 분발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9월로 예정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 실행을 위해 정부 및 양돈농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돼지콜레라 근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시기에 대하여 염려와 함께 걱정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곤 하였다. 완벽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후 접종중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예방접종 중지시기의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조기중지를 서둘렀던 일부 지역에서는 구제역 근절사업에 열중하느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다소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김 종 염 바이러스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난 해부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고려해 오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시기는 이제 눈앞에 필연적으로 맞이할 현실로 닥쳐왔다.

조기 중지 계획을 쉽사리 이행하지 못하고 주춤하면서 중앙정부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 시기가 금년 2월 말로 결정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강원도가 육지에서는 제1차로 금년 1월부터 예방접종을 중지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다른 일부에서도 조기중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고려해 오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시기는 이제 눈앞에 필연적으로 맞이할 현실로 닥쳐왔다.

2.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의 동시근절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른 상태

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초동방역의 성공적 수행으로 6개 시·군 15개 농가 외에 더 이상의 발생이 되지 않고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은 정부, 양축 농가, 생산자 단체 등 온 국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결과라고 믿는다

그러한 기본의식과 저력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초기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당시 시·도의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아래 검역원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가가호호 방문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거나 독려하여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던 그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점차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양돈 농가의 의식 변화로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의 확산 방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땀흘린 보람이 구제역 근절 과정에서 그 진가를 나타내게 했으며 그야말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저력이 구제역 박멸에 적용되어 두 질병을 근절하고 동시에 청정화를 선언함으로써 축산물의 수출개를 위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적절한 방역조치와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근절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봄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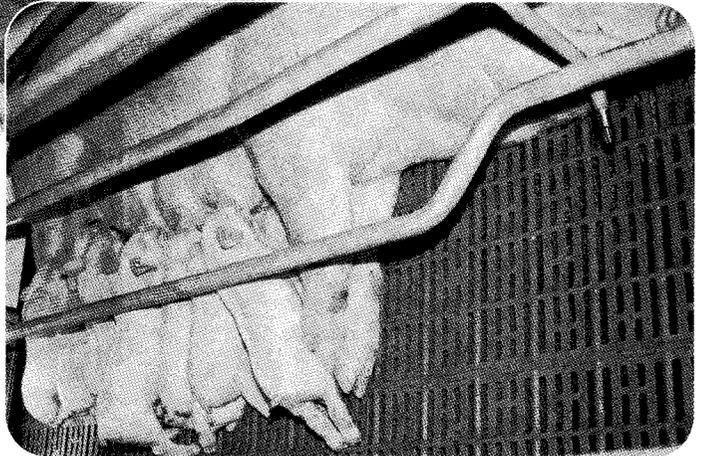
3.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노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가 결정된 이 시점에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선 접종중지



◀예방접종, 차단방역, 소독, 사후관리지침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적절한 방역조치와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근절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전까지는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이며, 예방접종 중지 후는 청정화 상태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검역원에서 수행한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면역형성률은 '98년(76.1%) 이후 점진적으로 증진되어 작년 11월까지는 96.4%를 나타냈다. 한편 작년 1년간의 면역형성률은 9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

1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축장 및 양돈 농가에서 채취된 돼지혈청 약 470,000두를 검사한 결과 평균 96.1%의 양성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1월의 95.8%에 비해 양성률이 뚜렷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사육멧돼지, 흑돼지, 야생멧돼지에 대한 면역형성률은 각각 91%, 91%, 0% 이었으며,

병원체 검출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전국 도축장 및 농가에서 채혈한 돼지의 항원검사 성적은 3,653 농가의 33,902두를 검사한 결과 전 두수가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결과로 보아 야외 돼지콜레라 항원 음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항체확인 검사 결과 80%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전국 시·도별로 총 225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 등 행정 조치

를 취하였으나 양축농가에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반성하고 각성하여 예방접종에 협조하여 주는가가 문제이다. 또한 소규모 및 정착농원의 농가에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평균 96%이상의 양성률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99년 8월 용인시에서 발생한 예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 돼지콜레라의 철저한 예방접종을 하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는가?



였지만 불행히도 접종을 잘못 하였거나 빠뜨린 12두의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에 감염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소수 또는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는 경종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 예방접종 중지를 위한 대책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때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자칫 헛되지 않나 하고, 우려를 제기하기까지 했으며 일부 양축농가들도 언제부터인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뜻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걱정이 쌓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접종중지 시기로부터 5개월이란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이제 두달여 남은 동안 예방접종 중지예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 접종누락 또는 미흡한 개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둘째 : 소규모 및 정착농원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대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철저히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셋째 : 접종 중지예 대비 청정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예방접종 금지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 내 돼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1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
를 제외한 전국 도축장 및 양돈농가
에서 채취된 돼지열성 약 470,000두를 검
사한 결과 평균 96.1%의 양성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1월의 95.8%에 비해 양성률이 뚜렷이 상승했
음을 알 수 있다. 사육멧돼지, 육돼지, 야생멧돼지에
대한 면역영성률은 각각 91%, 91%, 0% 이었으며, 병
원예 검출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전국 도축장 및 농가에서 채취한 돼지의 양원검사 영
적은 3,653 농가의 33,902두를 검사한 결과 전
두수가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결과로 보
아 야외 돼지콜레라 양원 음성을
알 수 있다.**

5. 맺는 말

앞으로 약 2개월 후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중지된다. 각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중지예 대비하여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사항들을 착실히 보완해 나감으로써 당당하게 현실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예방접종, 차단방역, 소독, 사후관리지침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접종 중지 후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와 비발생국 상태가 지속되리라 생각한다. **양돈**

한다.

넷째 : 예방접종 금지조건(농림부 고시 제 1999-34호)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야 할 것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률이 95%이상 되어야 할 것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